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돌봄크레딧 신설 〉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623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돌봄크레딧 신설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5
다. 관계 기관 의견	12

I. 개요

1.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62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전진숙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2. 5.
- (3) 회 부 일 : 2026. 2.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빠르게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돌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한 가입기간 산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돌봄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경우 해당 기간이 연금 가입기간으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돌봄을 수행한 당사자는 노후 소득 보장에서 구조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고, 그 부담은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돌봄기본법」에 따른 돌봄기본소득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돌봄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정하고, 돌봄으로 인한 노후 소득 불이익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해당 가입기간 추가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며,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6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돌봄크레딧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622호)(이하 “「돌봄기본법안」”이라 한다)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돌봄기본법안」 제25조제1항1)에 따른 돌봄기본소득을 받거나 받았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때에 돌봄기본소득을 받은 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는 돌봄크레딧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19조의3(돌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돌봄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돌봄기본소득을 받거나 받았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1)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622호)

제25조(돌봄기본소득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상호의존적 삶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봄제공자(지정돌봄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돌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1. 비공식 돌봄을 상시적으로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가 제한되는 사람
2. 지정돌봄제공자로서 1인가구의 고립·은둔 당사자의 관계 회복 및 일상 돌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공동체 내에서 상호 돌봄의 가치를 실현한다고 돌봄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현행	개정안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포함한다)에는 돌봄기본소득을 받은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에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제51조(기본연금액) ① ----- ----- ----- -----. ----- ----- ----- -----.
가·나. (생략)	1. (현행과 같음)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2. ----- ----- ----- ----- -----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19조 및 제19조의3----- -----

현행	개정안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③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돌봄기본법안」은 동 개정안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을 담당하는 ‘돌봄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21호) 및 ‘돌봄기금’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돌봄”과 “비공식 돌봄”을 각각 ‘인간의 근원적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생존과 존엄을 유지하고 사회적 연결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인 모든 공적·사적 활동’과 ‘가족, 동거인 및 그 밖의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돌봄제공’으로 정의하면서(안 제3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돌봄관계를 신청하는 지정돌봄제공자 등록제도(안 제22조)와 지정돌봄제공자를 비롯한 돌봄제공자에 대하여 현금·지역사랑상품권 또는 그 밖의 사회적 보상의 형태로 지급하는 돌봄기본소득제도(안 제25조)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²⁾

- 참고로, 「돌봄기본법안」은 정춘생의원(의안번호 제10878호)과 이수진의원(의안번호 제13805호)이 각각 대표발의한 동명의 제정안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21호)과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80호)은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임.

□ 한편 「돌봄기본법안」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동 개정안은 「돌봄기본법안」 제25조제1항에 따른 돌봄기본소득을 받거나 받았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때에 돌봄기본소득을 받은 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는 돌봄크레딧을 도입하고, 여기에 드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2)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622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이란 인간의 근원적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생존과 존엄을 유지하고 사회적 연결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인 모든 공적·사적 활동을 말한다.
2. “비공식 돌봄”이란 가족, 동거인 및 그 밖의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돌봄제공을 말한다.
4. “지정돌봄관계”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특정한 상대방과 대가성 없이 형성한 상호 돌봄·보호 관계를 말한다.
5. “돌봄제공자”란 비공식 돌봄을 포함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2조(지정돌봄관계 등록) ① 지정돌봄관계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돌봄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 1인 이상을 지정돌봄제공자로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정돌봄관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돌봄기본소득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상호의존적 삶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봄제공자(지정돌봄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돌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1. 비공식 돌봄을 상시적으로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가 제한되는 사람
 2. 지정돌봄제공자로서 1인가구의 고립·은둔 당사자의 관계 회복 및 일상 돌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공동체 내에서 상호 돌봄의 가치를 실현한다고 돌봄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기본소득을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그 밖의 사회적 보상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 ③ 돌봄기본소득은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아니하며, 다른 사회복지 급여와의 중복을 이유로 그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돌봄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연금액이 가입기간에 비례하도록 설계된 국민연금제도의 특성상 돌봄 종사에 따른 노동시장 이탈로 가입이력 축적이 제한될 경우 노후소득의 안정이 저해되는 측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제공자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돌봄기본법안」 제27조³⁾에는 안 제19조의3에 따른 돌봄크레딧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돌봄크레딧 도입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인 ‘돌봄 제공’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돌봄크레딧 수혜자가 될 돌봄기본소득 수급자의 규모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그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 늘어나게 될 추가재정소요와 가입자 본인의 기여를 전제로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의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인 것으로 보임.

□ 둘째, 안 제19조의3제1항 본문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때’에 돌봄기본소득을 받은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복무·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⁴⁾을 각각 ‘군 복무

3)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돌봄기본법안」 (의안번호 제16622호)

제27조(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신청) 제25조제1항에 따라 돌봄기본소득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법」 제19조의3에 따라 돌봄기본소득을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줄 것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이 종료된 때'와 '자녀를 얻은 때'로 앞당기는 것과 관련한 그간의 우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산입 시점을 앞당길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단기간 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크레딧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주된 부분을 현세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미래세대에 그 비용이 전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공감대 등이 제기된 경과를 바탕으로 돌봄크레딧 도입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과 돌봄기본소득 수급 시점을 서로 일치되도록 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안 제19조의3제1항 단서는 돌봄크레딧으로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데,

현행법상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이 12개월로 정하여져 있는 군복무·실업크레딧이나,⁵⁾ 첫째·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각각 12개월씩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게 하면서 셋째 이후 자녀부터 자녀당 18개월씩을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출산크레딧⁶⁾을

4) 「국민연금법」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각 호 생략)

5) 「국민연금법」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각 호 생략)

6) 「국민연금법」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1.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

고려하여 돌봄크레딧으로 추가 산입할 수 있는 최대 가입기간의 적정 수준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넷째, 안 제51조제1항제2호다목은 돌봄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이하 “인정소득액”이라 한다)을 최근 3년간 전체 사업장·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하 “A값”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것인데(2026년 기준 A값 3,193,511원), 가입자의 자부담분 없이 전액 일반회계나 국민연금기금이 부담하는 출산크레딧(A값)·군복무크레딧(A값의 50%)의 인정소득액⁷⁾이나 가입자의 자부담분이 일부(25%) 있는 실업크레딧 인정소득액의 상한(70만원)⁸⁾ 등 현행 크레딧제도의 인정소득액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섯째, 「돌봄기본법안」 제26조제1항⁹⁾에서는 돌봄기본소득 수령이 거짓 또는 부정에 의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7)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에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8)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3조(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소득의 상한선은 70만원, 하한선은 영 제5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9) 전진속의원 대표발의 「돌봄기본법안」 (의안번호 제16622호)

제26조(돌봄기본소득의 환수) ① 시·도지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기본소득 수령이 밝혀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장이 이미 지급된 돌봄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돌봄기본소득의 일부가 환수된 경우 안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될 ‘돌봄기본소득을 받은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돌봄기본소득을 받은 기간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행법 제19조의2제6항의 위임을 받아 정하여진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제4항에서는 실업크레딧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여 반환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해당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⁰⁾

□ 여섯째, 돌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돌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돌봄기본법안」에서는 돌봄기금을 돌봄기본소득 지급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돌봄제공자의 노후소득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돌봄크레딧의 취지가 「돌봄기본법안」이 추구하는 ‘돌봄권 보장’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¹¹⁾

10)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⑥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 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④ 공단은 신청인이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된 경우에 해당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을 취소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전단에 따른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신청인이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더하여 반환한다.

돌봄크레딧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와 「돌봄기본법안」에 따른 돌봄기금이 분담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15년 1월 법률 제13100호로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도입된 실업크레딧의 비용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¹²⁾과 관련하여 당시 고용노동부는 ‘보도 설명자료’에서,

- ① 지원대상을 실업자 전체가 아닌 ‘구직급여 수급자’로 한정된 점,
- ② 구직자의 생활안정 및 안정적 구직활동 촉진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고용보험 목적에 적합한 점, ③ 비자발적 실업에 처한 실업자가 노후빈곤층이 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직자의 노후빈곤 위험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실업크레딧

11)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62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사람이 생애 전 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타인을 돌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돌봄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돌봄권”이란 모든 사람이 돌봄과 관련하여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애주기 전반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을 받을 권리

나. 모든 사람은 일과 돌봄, 휴식을 균형있게 유지하고 제반 사회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에서 다른 사람을 돌볼 권리

제20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돌봄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3. 기금운용수익금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2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돌봄권 보장을 위한 사업의 지원
- 2. 제25조에 따른 돌봄기본소득 지급
- 3. 제30조에 따른 돌봄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12)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은 고용보험기금 운용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하였으며,¹³⁾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는 실업크레딧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이 각각 25%씩 분담하도록 되어 있음(그 외 25%는 가입자 자부담).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돌봄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정하고, 돌봄으로 인한 노후소득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크레딧제도와와의 관계,¹⁴⁾ 노인·장애인 돌봄 크레딧 인정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하여 돌봄크레딧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6

13)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한국경제(3.2) “제멋대로 나랏돈 퍼주자는 소위 생활임금법은 또 뭔가” 사설 관련, 2015년 3월 2일.

14) 현행 군복무·출산·실업크레딧은 수혜 대상이 명확하고 제한적이거나, 개정안에 따른 돌봄크레딧은 광범위·불분명한 측면이 있음.